

충청북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에 관한 조례안

검토보고서

- 다음은, 「충청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에 관한 조례안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.
- 제정이유는
 - 제정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, 시행규칙이 2006년 1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하도록 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
- 주요 내용은,
 -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은 9인 이내로 하고, 위원장은 경리관이, 위원은 관련분야 교수, 변호사,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자, 해당분야 기술자격 취득자, 관련협회 추천자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교육감이 위촉하고
 - 위원의 임기를 위원장을 제외하고 2년 연임이 가능하며
 -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격 제한, 계약체결방법에 관한 사항,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, 부정 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및 기타 필요하다고 인

정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였고

-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으며,
- 위원회내에 5인 이상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음을 규정하였고
-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, 공정하지 않은 심의 또는 자문으로 계약사무 수행에 현저한 해를 끼친 경우, 품위 손상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도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.

□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.

- 본 제정 조례안은 2005년 8월 4일 제정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를 근거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것으로 계약업무 추진에 있어 보다 적법하고 공정하며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- 다만,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사대상 계약건수 및 연간 위원회 예상 개최회수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.